

안전관리규정심사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7일(법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20일)
------	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※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됩니다.

신청인	상호:		
	대표자:		생년월일:
	사무소 소재지:		전화번호:
	전자우편주소:		
	사업자등록번호:		

세부	사업소 소재지		
내용	사업 등의 종류	[] 충전사업 [] 집단공급사업 [] 판매사업 [] 영업소 [] 저장소 [] 가스용품 제조사업	
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심사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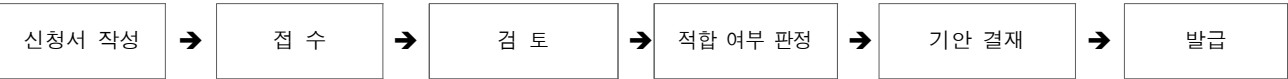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

첨부서류	안전관리규정 3부	수수료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수료
------	-----------	--

처 리 절 차



신청인

한국가스안전공사

한국가스안전공사

한국가스안전공사

한국가스안전공사